재해사례	중대 재해 사례	KOSL 재해사례 - 114

제 목	블록 외판에 작업발판 설치용 3단걸이를 설치하던 중 떨어짐

재 해 개 요

2016년 6월 3일(금) 15:12분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○○○○○의 옥외작업장에서 사내 협력사인 □□□□ 소속 비계설치·해체 작업자가 컨테이너선 블록의 외판 상부에 작업발판 설치용 3단걸이를 설치하던 중 뒤로 넘어지며 8m 아래로 떨어진 재해임

재 해 유 발 행 동 및 위 험 요 인

○ **블록 위 고소작업 시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**
○ **안전작업을 위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**
○ **위험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 미수행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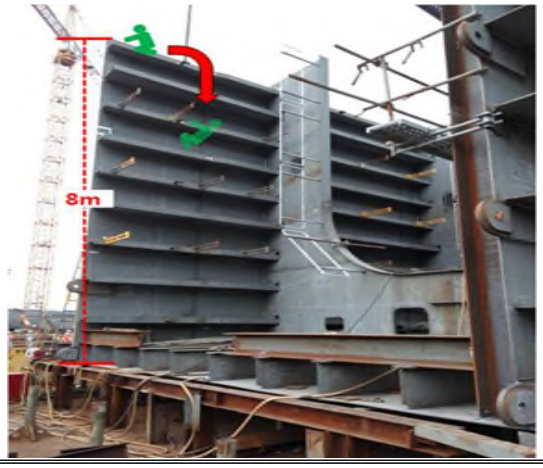

재 해 예 방 대 책

○ **비계설치 작업자가 선박블록 위의 고소에서 작업발판 설치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거나 또는 고소작업대 등의 설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고소작업을 수행토록 조치**

○ **3단걸이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시에는 떨어짐, 넘어짐, 끼임 등의 재해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(작성)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토록 조치**

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, 울타리,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(이하 이 조에서 "난간등"이라 한다)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,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
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